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근거 법률에 명시>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9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사회통합 프로그램 현황	6
가. 제도 개요	6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7
3. 개정안의 검토	8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2025. 7. 15.
3. 회 부 일: 2025.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을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관리에 대한 기준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기관 간 자격과 역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대한 법적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지정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9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업무 수행 실무경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운영기관에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보고를 법무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운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39조제2항·제5항, 제39조의2, 제39조의3).

현행	개정안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생략)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u>운영기관</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 ----- ----- ----- <u>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u>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u>	⑤ ----- -- <u>개발</u> -----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운영기관의 지정·관리)

① 제39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과 관련한 실무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

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관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3(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경우

3.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요
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
여 위반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사회통합 프로그램 현황

가. 제도 개요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고자 실시하는 사회통합 교육으로,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시 가점부여나 영주·국적 신청 시 시험 면제 등의 이민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그램 교육 과정으로는 정규 교육, 시민 교육, 이민자멘토 교육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과정인 정규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총 415시간, 0단계~4단계),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법 등 총 100시간, 5단계)으로 구성되어 있음¹⁾.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 정규 교육 구성]

구분 \ 교육명	한국어와 한국문화(415시간)					한국사회 이해(100시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 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영주용)	심화(귀화용)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70시간	30시간

* 자료: 법무부(재구성)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살펴보면, 2021년 43,552명, 2022년 42,163명으로 4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 58,028명, 2024년 70,949명, 2025년 90,180명으로 대폭 상승 중이며, 2026년의 경우에는 5월 기준 58,022명에 달하여 연간 9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1) 정규 교육은 가장 대표적 형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고, 이 외에도 시민 교육, 지자체연계 프로그램 교육, 이민자 멘토교육 등의 유형과 최근 특별 수요에 따라 실시 중인 산업 현장 방문형, 숙련기능인력 특별반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5월
참여자 수	36,620	43,552	42,163	58,028	70,949	90,180	58,022

* 자료: 법무부(2026.6월 기준)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단체 등 2025년 7월 기준 전국에 총 384개소를 지정하고 있고, 운영기관의 종류로는 이민자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일반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거점 운영기관’이 있으며, 거점운영기관 중에는 평가관리 등의 전국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거점운영기관’ 1개소(한국이민재단)가 있음.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단위: 개)

유 형	거점 운영기관*	일반 운영기관**
대학교	33	7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78
지방자치단체	4	21
사회복지관	-	20
기타 단체***	8	145
합 계	45	339

* 자료: 법무부(재구성, 2025.7월 기준)

* 거점운영기관 : 관할 거점 내 운영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조정·운영, 학사 및 강사 관리 총괄

** 일반운영기관 : 교육과정 운영, 개설 과정 및 소속 강사 관리 감독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 일부 예시]

관할 출입국기관	거점 구역	거점 기관명
서울	중앙	(재)한국이민재단
	서울1	(사)몽골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서울2	중앙대학교
	서울3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4	숙명여자대학교
인천	인천1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2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천3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10	(사) 경기글로벌센터
수원	경기1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2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3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경기4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
제주	제주1	제주이주민센터

* 자료: 법무부(재구성, 2025.7월 기준)

3. 개정안의 검토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장관이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관련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2)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운영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 요건, 지정 여부 결정,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지정 취소가 필요한 경우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사항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에 따른 운영기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시 활용이 가능한 사무실 및 교육장소의 확보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확보
3.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4. 그 밖에 운영인력 확보 등 운영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요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업무 수행경력 및 전문성
2. 전문인력의 확보 및 교육시설·기자재 등의 구비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4. 최근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략)

제50조(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운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을 위반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1의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
2.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 제2항에 따른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고 및 시정 요구와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처분기준 등 운영기관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를 통해 전국 384개소에 달하는 기관의 지역·인력·시설 기준을 법정화하여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기관 간의 프로그램 운영 역량 편차를 줄여 통일된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프로그램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제고에 기여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법무부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다양한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과 탄력적인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프로그램 기관 지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아니어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운영기관 지정을 받아야 인력·시설을 갖추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교육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는 운영 주체의 권리·의무 변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이수 여부는 체류허가, 영주 및 귀화를 희망하는 이민자의 지위와 권익에 관한 중요사항이라는 점, 그리고 법률과 하위법령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범위 등을 어느 수준까지 법률에 명시할지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과 같은 법원리 준수와 법조항의 유기적·체계적 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입법정책적인 영역이라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의 경우에는⁴⁾ 참여자 평가, 평가의 위탁 및 비용지원, 수탁자의 평가수수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납 등의 중요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어느 범위까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법률에 상향 규정할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법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이 운영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 제39조의2에 신설하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운영기관에 지정”에 관한 내용인 안 제39조제2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 제39조의2로 이관하여, 제39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만 으로, 제39조의2에는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의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이어서 운영기관의 지정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현행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등의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른 요건 추가 혹은 법적 구속력 강화가 이루어질 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 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체계화·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대학,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있는 만큼, 현행 제도하에서 운영 중인 384개 기관에 대한 소급 적용 혹은 장래의 지위 부여 등 신법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부칙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57